

## 한국중재의 영역확대 방안에 관한연구\*

### A Study on the Expansion of Arbitration's Area of Coverage in Korea

김 석 철\*\*  
Suk-Chul Kim

〈목 차〉

- I. 서 론
- II. 주요국의 중재대상과 운영시스템
- III. 중재대상과 운영시스템의 비교분석
- IV. 중재영역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 V. 요약 및 결론

주제어 : 상사분쟁, 중재시스템, 중재법원, 대한상사중재원

\* 본 논문은 한국 중재학회의 2010 추계 중재학술발표(2010.10.18)에서 발표한 것으로 경원대학교 연구 장려금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논문임.

\*\* 경원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에 중재제도가 처음 도입 된 것은 1912년 조선민사령 제1조 13호에 의해 구 일본 민사소송법이 의용 된 때부터이며, 일본 민사소송법 제8편(중재수속)에 규정되어 있었다. 조선민사령은 1945년 해방 후에도 미군 법령 제21호에 따라 효력이 지속되어 왔다. 1960년 한국의 민사소송법이 제정 될 때에는 중재편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1966년 단독중재법이 제정 될 때 까지는 중재법이 없는 시대였다.

한국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 시에 수출제일주의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외국의 수입업자에게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시이나 한국에 대한 투자의 경우 수입과 투자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을 국제사회에 널리 선언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에 따라 1966년 3월16일 법률 제1767호로 중재법을 공포함으로써 한국에 중재가 탄생하게 되었다.

1966년의 중재법은 일본과 독일의 민사소송법을 근거로 한 것으로 실무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1973년 2월17일 법률 제2537호로 중재진행절차와 중재인 선정 시에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보완 하였다. 이후에도 국제사회에서의 계속적인 중재제도 발전에 따라 중재의 표준화를 통한 세계화가 추진되었으며 UNCITRAL에서는 1985년 모델중재법을 제정하여 세계 각국에 채택하도록 권장하게 되었다. 한국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UNCITRAL 모델법 채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한국은 1999년 12월 법률 제6083호로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채택하여 중재법을 개정하였으며 한국중재의 국제적 투명성, 공정성,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었다.<sup>1)</sup>

상기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한국의 중재는 수출중대와 외국투자유치목적에서 시작하여 지금도 세계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는 등 외국을 향한 국제분쟁해결차원에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집권집단의 정치적 목적 달성이나 국가 왕권으로부터 독립하여 동업자간의 자치적인 분쟁해결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시작하여 국내분쟁해결에서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중재탄생배경의 차이로 인하여 한국의 중재대상은 무역과 투자에 대한 분쟁의 해결에 집중되어 상기 국가들에 비하여 중재가 다양하게 한 업종에 폭넓게 발전하지 못한

1) 광영실·김석철, 「상사중재론」, 도서출판 두남, 2008.9 pp.121~128.

문제점이 따르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재제도가 한국보다 먼저 시작한 국가들의 중재법에 규정된 중재대상에 대한 연구와 중재운영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한국의 중재영역에 대한 현실태와 비교분석 후 한국의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중재대상 영역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주요국가의 중재법상의 중재대상과 중재운영시스템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중재영역의 검토 대상 국가는 아시아 국가로서는 한국과 중국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여 제외하였다. 미주국가로서는 세계에서 중재가 가장 발전한 미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유럽 국가는 중재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영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독일,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국제중재의 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뉴욕협약도 검토하였다.

연구방법은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대상 국가들의 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영역과 관련된 규정에 해당되는 중재의 대상, 장래분쟁의 중재허용여부, 중재합의의 방식, 중재합의의 필수조건, 노동 및 소비자 분쟁 등의 중재대상 허용여부, 국제중재대상 등에 대한 내용과 중재 운영 시스템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이들 각각에 대한 국가들 간의 차이점들에 대해 비교분석을 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한국의 중재영역 확대방안을 중재법과 시스템상의 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 본 논문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었다.

## Ⅱ. 주요국의 중재대상과 운영시스템

### 1. 아시아주

#### (1) 한국

##### 1) 중재법상의 중재대상

한국중재법에서는 중재대상을 「사법상의 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sup>2)</sup> 여기서 분쟁이라

2) 한국중재법 제 1조(목적) “이법은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 공정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 3조(정의)의 1 “중재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

함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 포함」으로 정의하고 있다.<sup>3)</sup>

중재는 중재 합의가 있어야 하며 중재 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중의 중재조항의 형식으로<sup>4)</sup> 서면으로 된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sup>5)</sup> 여기서 서면중재합의라 함은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서신, 전보, 전신, 모사전송,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 중에 중재 합의가 포함된 경우이며 일방당사자가 교환된 문서 중에 중재 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와 계약이 중재 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재합의로 간주하고 있다.<sup>6)</sup>

## 2) 중재운영시스템

한국의 중재기관탄생은 1962년부터 시작된 수출지향주의적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 국내기업과 외국 기업 사이에 거래가 증대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국제간의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됨에 따라 외국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하는 무역 분쟁을 신속하고도 원만하게 해결 해 줌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한국기업의 신용제고를 통한 수출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1966년 3월 16일 중재법을 제정공포 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1966년 3월 22일 대한상공 회의소 내에 국제상사중재위원회를 창립한 것이 그 출발이다. 그리고 1970년 3월 21일 당시 상공부(지금의 지식경제부)는 설립허가 142호로 독립중재기관인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를 설립하였다. 그 후 1980년 8월 29일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한국의 대표적 상설 중재기관으로 발전 해왔다. 따라서 대한상사 중재원은 국내 및 국제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알선·조정·중재로 해결하는 사실상의 국내 유일의 법정 중재기관이다.<sup>7)</sup>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관할 대상은 상사분쟁이며 한국 상법상의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등과 같은 22가지의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등이라고 할 수 있다.<sup>8)</sup>

그런데 한국은 중앙 정부조직이 업종별로 상공업, 농수산물, 의료약품, 은행·보험·증권·소비자·공정거래, 노동, 고용과 같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 산하의 대한상사중재원이 타 중앙 부처 관할 업무인 예를 들면 식품농림수산부 관할의 위해식품에 대한 배

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한국중재법 제 3조(정의) 의 2호 참조.

4) 한국중재법 제 8조(중재합의의 방식) 제 ①항 참조.

5) 한국중재법 제 8조(중재합의의 방식) 제 ②항 참조.

6) 한국중재법 제 8조(중재합의의 방식)제 ③항 과 제 ④항 참조.

7) 박영실·김석철, 「상사중재론」, 도서출판 두남, 2008.9. P.133.

8) 한국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및 제47조(보조적 상행위) 등 참조.

상청구권, 보건복지부의 의료사고 분쟁 등에 대해서도 관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설립취지가 국제거래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에 국제거래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겠으나 국내거래분쟁은 관할중앙 부처가 별도의 운영시스템을 갖춘다면 상호협조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 (2) 중국

### 1) 중재법상의 중재 대상

중국에서의 중재법의 중재 대상은「경제적 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분쟁이란 함은 평등한 주체로서의 공민, 법인 기타 경제단체간의 「계약상의 분쟁 및 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sup>9)</sup> 「혼인·입양·후견·부양 및 상속 관련 분쟁」과 「행정기관이 해결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분쟁」은 중재의 대상이 아니다.<sup>10)</sup>

중국의 중재도 당사자 간에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고자하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중재합의 체결이 우선되어야 하며,<sup>11)</sup> 중재합의 형식은 계약 중에 삽입된 중재 조항 또는 분쟁 발생 전 또는 후에 체결된 서면중재합의를 포함하고 있다. 중재합의 내용에는 중재신청의 의사표시, 중재의 대상, 중재위원회의 지정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sup>12)</sup> 중재위원회의 지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중국은 임의중재를 허용하지 않고 기관중재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섭외중재에 대하여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섭외규정의 대상은 섭외경제, 무역·운송 또는 해운관련 분쟁의 중재에 적용되며 중국국제상회가 중재를 수행할 섭외중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sup>13)</sup>

그리고 「노동쟁의 중재나 집단 농업조직내의 농업계약 관련 분쟁의 중재」는 별도로 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중재법과는 관련이 없는 별도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sup>14)</sup>

### 2) 중재운영시스템

중국의 중재는 국내중재와 섭외중재로 나누어져 있다. 국내중재는 1933년 11월의 중화소비에트 노동법에 의해 노동자계급에 의한 중국공산당 정권의 체제 확립을 위해 중국 중앙 및 각 지역의 성과 시 등에 중재기관을 설립한 것이 그 시작이다. 중화소비에트 노동

9) 중국 중재법 제 2조 참조.

10) 중국 중재법 제 3조 참조.

11) 중국 중재법 제 4조 참조.

12) 중국 중재법 제 16조 참조.

13) 중국 중재법 제 16조 참조.

14) 중국 중재법 제 VII 장 섭외중재에 관한 특별규정 제 65조 및 제 66조 참조.

법에 의한 중재는 중국 공산당의 노동자에 대한 응화 및 체제수호차원의 활동으로 오늘날의 중재와는 그 성격을 달리 하였다. 아직까지 지방의 중재는 지역의 이익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실현이라는 목표이긴 하지만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맞추어 국제화를 위하여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섭외중재는 1954년 5월 6일 정무원 제215회 회의에서 중국국제무역촉진회에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국제무역촉진회는 1956년 3월 31일 대외무역중재위원회 중재절차집행규칙을 제정하였다. 1991년에는 민사소송법에 섭외중재규정을 채택하였다가 1994년 8월31일 독립된 중국중재법을 제정하여 오늘날의 중국 국내 및 섭외 중재법이 탄생되었다.<sup>15)</sup>

중국의 중재기관은 전국 성과 시에 180여개의 국내분쟁 중심의 중재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섭외 중재 기관으로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와 중국해사중재위원회(CMAC)가 있다.<sup>16)</sup>

## 2. 미주

### (1) 미국

#### 1) 중재법상의 중재대상

미국의 중재법은 미국의 주법으로 대표 되고 있는 통일 중재법(the Uniform Arbitration Act)과 미국의 연방법인 연방중재법(the U.S. Arbitration Act )이 있다. 미국의 통일 중재법 (the Uniform Arbitration Act)에서는 「중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 없으며, 중재합의는 현존하는 분쟁을 중재 부탁하는 서면합의나 당사자들 간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는 서면계약에서의 조항이 있는 서면중재합의는 유효하고 강제력이 있고 취소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은 당사자 합의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중재합의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sup>17)</sup>

미국통일중재법은 1955년 미국통일주법위원회의 내셔널 컨퍼런스에서 처음 채택하였다. 1955년에 미국 변호사 협회에서도 채택한 중재법으로 미국의 32개 주정부와 미국영의 콜럼비아가 채택하고 있는 미국 주정부의 중재법이라고 할 수 있다.<sup>18)</sup>

미국통일중재법을 채택한 주정부와 각 주정부의 중재대상을 1984년과 2010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984년의 경우 통일중재법 채택 국가는 알래스카 등 29개 주정부와 콜럼비

15) 김석철,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과 시사점."「2008년 한·중·러 상사중재 추계 학술대회」, PP.179-180.

16) 상기서 P.181.

17) the Uniform Arbitration Act 제 77조 참조.

18) the Uniform Arbitration Act,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 section1 참조.

아이였다.<sup>19)</sup> 그러나, 2010년 기준 현황은 1984년 이후 하와이,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등 3개 주정부는 통일법 채택을 탈퇴하였으나 미시간, 몬타나, 네브라스카, 노스다코타, 버몬트, 버지니아 등 6개 주정부가 채택하여 현재 32개 주정부와 콜롬비아가 채택하고 있다.<sup>20)</sup>

통일중재법을 채택하지 않은 주정부라 하더라도 주법에서 통일 중재법과 같은 현존분쟁 뿐만 아니라 장래발생분쟁도 중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정부는 1984년 에는 44개 주정부와 콜롬비아와 푸에르토리코였으나<sup>21)</sup> 2010년 현재는 알라바마와 웨스트버지니아주 2개만 현존 분쟁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48개 주정부는 현존 및 장래분쟁을 중재대상으로 채택하고 있다.<sup>22)</sup>

중재대상영역은 1984년의 중재대상은 건설, 보험, 임대차, 노동계약, 대부, 매매, 불법행위, 보험 미가입 자동차운전자, 의사·변호사 등 7개 영역이었다. 그러나 7개 영역에 대해서도 알라스카, 아리조나, 델라웨어, 아이다호, 캔사스,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메사츄세츠,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13개 주정부는 노동계약은 중재대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알칸사스, 캔사스, 켄터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등 7개 주정부는 보험중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인디애나는 임대차, 대부, 매매, 중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알라스카, 캔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불법행위를, 메인주정부는 보험미가입자동차운전자를,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의사와 변호사 중재를 인정하지 않았다.<sup>23)</sup> 그러나 2010년 현재는 알라바마, 미시시피, 웨스트버지니아가 건설 중재만을 인정하고, 그 외 주정부는 중재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주정부는 없다.<sup>24)</sup>

미합중국 중재법 (the United States Arbitration Act)은 1952년 2월에 미합중국 타이틀 9로 제정하고 1947년 7월에 성문화된 연방법이다. 동법은 미국 주정부와 주정부간 또는 미국영인 콜롬비아 등과 각 주정부간, 미국과 외국 간 등의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sup>25)</sup>

미합중국중재법의 중재대상은 「계약, 거래와 관련된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거절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분쟁」이다. 중재합의는 당사자들 사이에 현존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는 서

19) www.adr.org

20)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the Uniform Arbitration act,p.11, modern Arbitration Statutes in the United States as of May 1984.

21) 2010년 현재 통일중재법 채택주정부 및 자치령 : ①알래스카 ②에리조나 ③알칸사스 ④콜로라도 ⑤델라웨어 ⑥아이다호 ⑦일리노이 ⑧ 인디애나 ⑨아이오아 ⑩캔사스 ⑪켄터키⑫메인 ⑬메릴랜드 ⑭메사츄세츠 ⑮미시간 ⑯미네소타 ⑰미주리 ⑱몬타나 ⑲네브라스카 ⑳네바다 ㉑뉴멕시코 ㉒노스캐롤라이나 ㉓노스다코타 ㉔오클라오마 ㉕펜실베니아 ㉖사우스캐롤라이나 ㉗사우스다코타 ㉘테네시 ㉙텍사스 ㉚버몬트 ㉛버지니아 ㉜와이오밍㉝콜롬비아.

22) 상기 15)와 동일.

23) 상기 14)와 동일.

24) 상기 15)와 동일.

25) 상기 14)와 동일.

면합의가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는 서면계약서상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유효하고 강제성이 있으며, 취소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6)</sup>

## 2) 중재운영 시스템

미국중재는 기관중재가 발달된 국가로서 업종별 단체가 자치적인 중재기구를 구축하여 사법부보다는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인 중재기관은 업종별 단체별로 중재기관을 두고 있으며 분쟁의 약 70%수준은 업종별 단체중재기구가 중심이 되어 해결하고 있다. 전문중재기관은 미국중재협회, 미국해사중재위원회, 미국경영개선위원회 등이 있다. 미국중재협회는 뉴욕에 본사가 있으며 미국전역에 35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는 8천명이상의 중재인단이 규정되어 있는 미국의 종합중재기관이다. 상사·건설·직물의류·노동·교통·선거·소비자·의료 등 46개의 중재규칙을 제정하여 중재를 하고 있다. 특히 업종별 단체는 자체중재기구를 두거나 미국 중재 협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건설중재는 미국의 건설회사 및 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National Construction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NCDRC) 가 미국중재 협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중재는 미국중재협회에서 하나 건설중재규칙제정, 제정지원, 홍보, 중재인 참여 등으로 건설중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직물의류중재도 건설중재와 같은 체제로 운영 되고 있다.<sup>27)</sup>

미국 경영 개선 위원회는 소비자중재, 부당거래중재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해사중재위원회는 해운, 물류, 해상보험 등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고 있다.

## 3. 유럽주

### (1) 영국

#### 1) 중재법상의 중재대상

영국중재법에서는 “「분쟁당사자는 공공질서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쟁해결 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합의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28)</sup>

중재합의는 서면 합의인 경우가 효력이 있으며, 중재합의서의 범위는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 및 중재합의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서신에 포함되어 있거나, 중재합의 사실을 서면으로 입증할 경우, 서면계약조건 인용을 통하여 서면 이외의 합의를 한 경우, 서면이 아닌 합의가 당사자 일방에 의해 또는 당해 합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제3자에 의해

26)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the United State Arbitration Act」,p.2 preface 및 §1

27) 김석철. 「건설 중재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구축방안 연구」 「중재연구」제14권 제1호, 2004.8. PP.105-107.

28) The United States Arbitration §2 (Validity, Irrevocability and Enforcement of Agreements to Arbitration)

기록으로 남겨진 경우에도 서면입증이 가능한 합의로 간주된다. 또한 중재 혹은 소송절차상 준비서면 등의 교환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서면이 아닌 합의의 존재를 주장하고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서면합의가 된 것으로 본다. 이상에서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함은 여하한 방법으로 기록된 모든 것을 포함 하고 있다. 29) 따라서 서면합의로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는 관계없으며」, 현재 혹은 장래의 분쟁을 중재에 회부키로 한 중재합의도 유효하다. 계약서안의 서면중재조항 또는 중재조항이 포함 문서의 인용 조항이 계약의 일부인 경우에도 중재합의가 된다.30)

영국중재법은 소비자의 계약에 관한 불공정거래 계약의 내용을 소비자중재합의 조건으로 확대적용하고 있다.31) 이때 소비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 되고 있어 한국보다 확대 적용 되고 있다.32) 그러나 지방법원의 소액중재는 본 중재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33)

영국중재법은 상사법원의 판사와 대법원법에 따라 선임되어있는 공인중재인이라 하더라도 정황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중재합의에 따른 중재인으로 선정 될 수 있으며, 상사법원의 수석재판관이 고등법원 또는 형사법원의 업무 형편상 중재인 수락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재인 선정을 수락할 수 있다. 그리고 공인중재인도 수석 재판관이 업무형편상 중재인 수락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단 중재인 수당은 고등법원에 귀속된다.34)

영국의 중재법은 「영국의 제정법에 근거한 모든 중재에 적용」되며35) 제정법에 의거한 중재합의는 본 중재법의 중재합의로 간주되고 제정법 중재의 신청인과 피 신청인은 중재합의의 당사자로 간주한다.36)로 규정하고 있다.

## 2) 중재운영 시스템

중재의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운영시스템은 생략함) 길드와 쥘프트와 같은 실업자단체가 왕권에 의한 분쟁해결제도의 탈피를 통한 지위향상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기구를 구축하였다. 실업자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자치도시와 자치단체가 중재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특수재판 제도가 오늘날의

29) U.K. Arbitration Act 1996, 5조 Agreement to be in writing 참조.

30) U.K Arbitration Act 1996, 6조 Definition of Arbitration Agreement.

31) U.K. Arbitration Act 1996, Part II Other Provision Relating to Arbitration,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 89조 참조.

32) 상기법 90조 참조.

33) 상기법 Small Claim Arbitration in the county court 92조 참조

34) 상기법 Appointment of Judge as Arbitrators 95조 참조

35) 상기법 Statutory Arbitration 94조 참조.

36) 상기법 Statutory Arbitration 95조 참조.

국가차원의 상사법원(Commercial Court) 혹은 중재법원이며 업종 단체개인차원의 임의 중재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상사법원이나 중재법원은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지는 않으나 중재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특수한 법원이다. 즉 영국은 상사법원으로, 러시아에서는 중재법원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영국은 업종별 단체가 중심이 되어 임의중재가 발달되었다.

중세유럽에서는 국왕의 도움아래 무역업자들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등의 항구도시에서 해상무역활동이 자치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이 해사관습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치적인 분쟁해결제도로 탄생한 것이 유럽국가의 사법부로서의 해사법원(Court of Admiralty)이며 당사자 자치의 해사중재위원회이다.

각 지역에 시장이 발달되면서 상인들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치적인 각 분야 대표로 구성된 구성원에 의하여 중재적 방법으로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 한 것이 오늘날의 스웨덴의 시장법원(Market Court or Fair Court)으로 발전하였으며, 부당거래분쟁, 소비자분쟁 등을 관장하고 있다.<sup>37)</sup>

## (2) 프랑스

프랑스는 민사소송법의 제 4편에 중재 규정이 있으며 단독법이 아닌 민사 소송법의 1개의 편으로 되어있다. 동법에서 중재의 대상이 되는 중재합의는 계약당사자가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하는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와<sup>38)</sup> 분쟁 당사자가 현존분쟁을 1인 혹은 수인의 중재판정부에 회부키로 합의한 경우<sup>39)</sup>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조항은 주된 계약 또는 동계약이 원용하는 특정서류에 서면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중재조항에는 중재인을 선정해두거나 선정방법을 명시 하여야 한다.<sup>40)</sup> 그리고 중재 계약에도 분쟁 대상을 특정 하여야 하며 중재인을 선정 해두거나 선정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sup>41)</sup>

중재계약은 서면으로 작성 되어야 하며 중재인과 당사자가 서명한 별도의 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sup>42)</sup>

## (3) 독일

독일중재법은 민사 소송법의 제 10편에 편제되어 있으며 독립된 중재법 체제는 아니다.

37) 박기원·김석철, 「상사중재론」, 도서출판 두남, 2008.9 PP.44-46.

38) France Code of Civil Procedure Part IV, Arbitration Title I, Arbitration Agreements, Chapter I, The Arbitration Clause, Article 1442조 참조.

39) 상기법 Chapter II the Arbitration Contract, Article 1447조 참조.

40) 상기법 Chapter II The Arbitration Contract, Article 1443조 참조.

41) 상기법 Chapter II The Arbitration Contract, Article 1440조 참조.

42) 상기법 Chapter II The Arbitration Contract, Article 1449조 참조.

독일의 중재대상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포함한 모든 분쟁과 당사자들이 화해로 해결 할 수 있는 분쟁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에 중재합의를 한 경우에는 중재합의로서의 법적효력이 있다. 그러나 독일 내에 있는 주거시설의 임대차 관련 중재합의는 무효이며, 다른 법률이 특정분쟁의 중재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중재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sup>43)</sup>

중재합의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는 관계가 없으며 일정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도 대상이 되며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도 중재의 대상이 된다. 중재합의는 별도의 중재합의나 계약서상의 조항(중재조항)형식으로 할 수 있다.<sup>44)</sup>

중재합의의 형식은 당사자가 서명한 서류, 서신교환, 팩스 전송 합의의 사실을 기록하는 기타 수단에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적 형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또는 제 3자에게 전달한 서류 안에 중재합의가 있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로 간주된다. 중재계약 포함 서류를 계약의 일부로 인용할 경우도 중재합의가 된다. 용선계약의 중재조항을 인용하는 선하증권을 발생하는 경우에도 중재합의가 성립되며, 소비자 중재의 대상은 개별서명 서류에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sup>45)</sup>

#### (4) 러시아

러시아의 중재대상과 운영은 2002년 7월에 채택된 러시아 연방중재 법원법(the Federal Law on Arbitration Courts adopted on 24 July 2002)에 의한 국내중재와 1993년 8월에 효력 발생된 러시아 연방국제상사중재법에 의한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force 14 August 1933) 국제중재로 이원화 되어있다.

전자는 러시아 중재법원 (Arbitration Court)에서 관장하며 정부의 사법기관이다.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국제 분쟁은 관할하지 않고 국내중재만 관할한다. 러시아 중재법원은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임하는 중재가 아니며, 국내 모든 상사 분쟁과 일부 행정 분쟁 (행정 법원은 별도로 있으며 행정법원 관할권이 아닌 행정 분쟁임)을 관장하는 연방 상사행정법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중재법원이다.<sup>46)</sup>

후자는 러시아 상공회의소에 설립한 국제상사중재법원(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ourt)과 해사중재위원회 (The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에서 관장하고

43) Germany Tenth Book of the Code, Civil Procedure, Arbitration Procedure, Sections 1025 ~ 1066,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section 1030 Arbitrability

44) Germany Tenth Book of the Code, Civil Procedure, Arbitration Procedure, Sections 1025 ~ 1066,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Section 1029, Definition.

45) Germany Tenth Book of the Code, Civil Procedure, Arbitration Procedure, Sections 1025 ~ 1066,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Section 1031, Form of Arbitration Agreement.

46) <http://www.globalarbitrationreview.com/handbook/3/section/6/cha> 2007.7.29.

있다.<sup>47)</sup> 국제중재의 대상은 어느 일방의 사업장이 외국에 소재하는 조건하에서 외국무역과 국제경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과 민법관계의 분쟁이다. 외국투자 단체, 기업, 러시아 국가 내에 설립된 국가단체와 기구들 간 및 이들의 참여자들 간의 분쟁이다.<sup>48)</sup> 현존 및 장래발생 분쟁과 전부 및 일부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sup>49)</sup>

#### 4. 뉴욕협약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은 뉴욕협약이라고 하며, 외국중재판정에 대해 협약가입국간에는 중재판정을 상호 승인하고 집행을 보장하는 유엔에서 채택한 국제조약이다.

본 협약의 대상은 내국판정이 아닌 외국중재판정에 적용되며 임의중재나 기관중재에 의한 중재판정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입 국가는 국내법상 당사상의 법률관계 분쟁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할 것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대상을 국내 중재판정과 동일하게 하지 않고 차이를 두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sup>50)</sup>

중재합의 대상은 계약적 성격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며, 각 체약국 국내법상 중재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수 있는 전부 또는 일부의 분쟁이다. 중재합의는 당사자 간에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있어야 하며, 서면합의에는 계약중의 중재조항 또는 당사자 간에 서명하였거나 교환된 서신이거나 전보에 포함된 중재합의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51)</sup>

47)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ourt at the Chamber and Industry of the Russia Federation. Arbitration Institutes and Law.

48) 러시아 연방국제상사중재법 제 2조.

49) 러시아 연방국제상사중재법 제 7조 제 1항.

50) 뉴욕협약 제 1조 참조.

51) 뉴욕협약 제 2조 참조.

### III. 중재대상과 운영시스템의 비교분석

#### 1. 중재대상의 비교

〈표1〉 중재대상영역 비교표

국명	법명	중재대상	기타
한국	중재법	-사법상의 분쟁	-계약상의 분쟁여부 불문
중국	중재법	-경제적 분쟁으로서 계약 및 재산권 관련 분쟁	-계약 및 재산권 관련 분쟁 -혼인·입양·후견·부양·상속 관련 분쟁 및 행정기관 대상은 제외 -노동쟁의, 농업계약분쟁은 제외 -섭외 분쟁 대상은 섭외경제, 무역·운송·해운 분쟁이 대상임
미국	통일중재법	-주 정부 중재법에 해당됨 -영역지정규정 없으나 계약 및 거래관계 분쟁이 대상임	-알라바마, 미시시피, 웨스트버지니아는 건설 분쟁만 중재대상 -건설, 보험, 임대차, 노동계약, 대부, 매매, 불법행위, 보험미가입자동차운전자, 의사, 변호사, 소비자, 선거 중재 등이 있음.
	연방 중재법	-연방중재 -상사 및 해사 분쟁	-상사 및 해사 계약과 거래 관련 분쟁
영국	중재법 1996	-영역지정규정 없음	-소비자 계약에 관한 불공정거래약관의 내용을 소비자 중재합의 조건으로 확대적용(법인소비자 포함) -지방법원의 소액중재는 중재법 적용배제 -수석판사의 인정으로 상사법원 판사와 공인중재인의 중재인 선정가능 -개별 재정법에 의한 중재도 중재법의 중재로 간주
프랑스	민사소송법 중재편	-제한규정 없으나 민사분쟁이 대상임	-분쟁 대상을 특정화해야 함 -중재인지명 선정 하거나 선정 방법 명시
독일	민사소송법 중재편	-경제적 이해관계 포함된 모든 분쟁 -당사자의 화해 해결이 가능한 분쟁	-독일 내 주거시설의 임대차관련 중재 불가 -다른 법률의 별도의 중재는 본 중재법과는 무관 -소비자중재는 개별합의가 있어야함
러시아	-연방중재법 원법	-국제및행정분쟁(행정법원 관할은제외)	-러시아 중재법원에서 관장
	-연방국제상사 중재법	-무역 및 국제경제 구축계약, 관계분쟁 -해사분쟁	-러시아 국제상사중재 법원에서 관장 -러시아 해사중재위원회에서 관장
뉴욕협약	뉴욕조약	-상사분쟁	-계약상 분쟁여부 불문 -유보선언가능

### (1) 사법상 혹은 상사분쟁 대상

한국은 사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중재의 경우는 뉴욕협약 가입 시에 상호주의에 입각한 상사분쟁에 대하여 유보선언 하였다.

중국은 경제적 분쟁이 대상이며 더욱이 계약상의 분쟁과 재산권 분쟁에 한하고 있으며 혼인·입양·후견·부양·상속 관련 분쟁과 행정기관 해결 대상도 제외하며 노동쟁의와 농업 계약 분쟁도 제외하고 있다.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섭외경제, 무역, 운송, 해운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각 주정부와 연방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각 주정부는 알라바마, 미시시피 웨스트버지니아 등 3개주는 건설 분쟁의 중재만을 인정하고 있고 그 외 47개주와 콜롬비아 푸에르토리코 등은 중재대상 영역에 대한 제한이 없다. 실제로 미국 중재협회에서는 상사중재 뿐만 아니라 건설, 보험, 노동, 선거, 의료,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 등에 대한 중재를 하고 있으며, 미국 경영개선 위원회 (Better Business Bureau)에서는 소비자중재와 공정 경쟁중재 그리고 광고 분쟁 중재를 하고 있으며 해사중재기관에서는 해사중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중재에 해당되는 연방정부 차원의 미합중국중재법에서는 상사와 해사계약 및 이들 거래의 분쟁을 중재의 영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영국은 영역에 대한 대상은 지방법원의 소액분쟁만 영국중재법 적용을 배제하고 그 외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 소비자 계약에 관한 불공정거래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중재합의 조건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수석판사의 승인으로 상사법원 판사와 공인중재인이 당사자가 선정하는 중재인이 될 수 있으며, 각 개별법에 의한 중재를 중재법의 중재로 간주하는 등 중재영역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다.

프랑스의 중재법은 민사소송법의 중재편에 편입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민사상 분쟁이 중재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을 특정해야 하며, 중재인을 사전에 선정해 두거나 선정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독일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당사자 간에 화해로 해결이 가능한 분쟁이 중재대상으로 경제적 분쟁이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 내 주거시설의 임대차 관련 분쟁은 제외하고 있으며 다른 개별법에 의한 중재는 본 중재법과는 별개임을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국내중재에 해당하는 연방중재법원법에 의한 중재는 상사분쟁과 일부 행정분쟁 (행정법원관할은 제외)을 대상 영역으로 하고 있으며, 연방국제상사중재법에 의한 중재 대상은 무역 및 국제 경제구축 계약, 민법 관계 외국투자 및 국제분쟁, 해사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뉴욕협약은 국제상거래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며, 상사분쟁을 대상으로 한다는 유보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장래분쟁의 중재대상

중재계약이 분쟁 발생 전후에 따른 분류는 현존분쟁을 중재에 부탁하는 중재부탁계약과 계약서 등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서 등에 중재조항의 한 경우 등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상기에서 검토한 국가들 중에는 모든 국가가 현존분쟁과 장래분쟁에 대해 중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알라바마와 웨스트버지니아 주정부는 장래분쟁을 중재합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3) 중재합의의 서면주의

중재합의는 모든 국가가 서면합의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서면 합의는 당사자가 서명 문서에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로서 서신·전보·전신·모사전송·기타통신수단 등으로 교환된 문서 중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와 중재합의 계약서 등을 당해 중재계약으로 인용하는 서류 등도 서면합의로 간주하고 있다. 서면 합의와 관련하여 영국은 중재나 소송절차 중에 준비서면 등의 교환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중재합의를 주장하고 타방이 부인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면합의로 간주하고 있는 등 당사자가 부인하지 않고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면합의로 간주하는 폭넓은 해석을 하고 있다.

## (4) 필수중재합의 사항

중재 합의 시에 필수합의 내용은 기관중재와 임의중재 중심국가간에 차이가 있다. 임의 중재를 법적으로는 허용하고 있으나 기관중재가 활성화 되어있는 한국, 미국은 중재기관, 준거법, 중재규칙 등을 합의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중재만을 인정하는 중국은 중재기관명을 꼭 계약할 것을 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임의중재가 발달한 프랑스는 중재계약서에 중재인을 미리 선정하여 합의하거나 선정방법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5) 노동분쟁과 소비자분쟁의 중재대상여부

노동분쟁은 한국은 당사자 간의 사법상의 고용계약이기 때문에 한국중재법상의 제외 대상은 아니나 별도의 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 영국은 중재대상이 되며 중국과 독일은 별개의 개별법의 중재대상으로 중재법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중재는 한국은 특정 규정은 없으나 소비자기본법에서 조정제도로 운영 되고 있으며 중재제도는 없다. 미국, 영국 등은 중재법에서 중재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개별 서명서류에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 중재합의가 인정되나 미국은 업종별 단체 등의 집단선언의 경우에도 소비자만 승낙하면 중재합의로 간주하고 있다.

(6) 국제중재의 중재대상

국제중재의 경우 중국은 섬의경제, 무역, 운송 또는 해운 분쟁을 대상으로 하며, 미국은 미합중국중재법에서 상사 및 해사계약이나 거래와 관련된 분쟁은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외국무역 및 국제경제 구축계약관계분쟁 및 해사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중재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뉴욕 협약 가입 시에 상사분쟁에 한해 유보선언을 하였으며 뉴욕협약은 상사분쟁이 대상이다. 따라서 국제간의 공통적 중재 대상은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며, 현존 및 장래분쟁과 전부 또는 일부 분쟁이 국제중재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2. 중재운영 시스템의 비교

〈표2〉 중재운영시스템 비교표

국명	기관	기관성격 및 업무
한국	-대한상사중재원	-지식경제부 산하 무역클레임 및 상사분쟁 중재기관 -각 중앙부처별 개별법에 의한 조정기구는 있으나 정부가 승인한 중재기관으로는 국내 유일한 기관임
중국	-성·시등의 중재위원회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중국해사중재위원회(CMAC)	-국내 경제적 분쟁 해결 중재기관 -중국의 대표적 섬외중재기관 -섬외중재기관으로 해사분쟁중재 기관임
미국	-업종별단체중재위원회 -미국중재협회  -해사중재위원회 -미국경영개선위원회	-업종별단체의 자치적 중재기구 -미국의 대표적 종합중재기관으로 자체내지는 업종별단체와 협정체결한 중재 전문 기관임 -해사분쟁 중재기관 -소비자, 부당거래, 부당광고 등의 중재기관
영국	-영국상사법원 -영국해사중재위원회 -임의중재	-당사자의 중재인 선임이 아닌 법원중재인에 의한 사법기관 -해사분쟁전담 중재기관 -상사법원이거나 해사중재위원회가 아닌 중재는 임의중재로 이루어짐
러시아	-러시아연방중재법원 -러시아국제상사중재법원 -러시아해사중재위원회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법기관으로 국내상사분쟁 중재기관 -러시아상공회의소가 설립한 국제상사 분쟁 중재기관 -러시아 상공회의소가 설립한 해사분쟁 중재기관

상기 표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주요국의 중재시스템은 다양하다.

한국은 수출제일주의 성장정책에 의해 지식경제부(당시는 상공부)가설립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관장하고 있으며 타 중앙부처는 조정제도에 머물러 있다.

중국은 국내, 섭외로 나누어져 있으며 국내는 성·시에까지 전국에 중재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섭외중재기관으로 CIETAC와 CMAC가 있다.

미국은 업종별단체가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였거나 아니면 미국의 대표적중재기관인 미국중재협회와 협력하여 중재가 활성화 되어 있다. 해사분쟁은 해사중재위원회가 관장하며, 미국경영개선위원회(Better Business Bureau)는 소비자 부당거래, 부당광고 등 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전담하고 있다.

영국은 사법기관인 상사법원이 있으며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지는 않지만 중재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며, 임의중재가 발달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도 영국의 상사법원과 비슷한 연방중재법원이 국내 상사중재를 관장하고 있으며 러시아상공회의소가 설립한 국제상사중재법원에서는 국제 상거래분쟁을 관장하고 해사중재위원회는 해사분쟁을 담당하고 있다.

#### IV. 중재영역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이상에서 각국의 중재법에 근거한 중재대상과 중재운영 실태를 살펴 본 후 이에 대한 비교검토를 해보았다. 이를 통하여 본 장에서는 중재영역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및 중재운영시스템상의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중재법상의 과제

###### (1) 중재 대상 영역의 확대

한국의 중재대상영역은 사법상의 분쟁을 그 대상영역으로 하고 있다. 공법과의 영역이 애매하거나 공법상의 문제 해결이 전제가 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중재에 의한 해결에 장애가 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중재법에서는 중재의 제한규정이 없으며 미국은 상사, 해사, 건설, 노동, 보험, 의료, 변호사, 소비자, 공정거래, 광고피해,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 등의 분쟁에 대한 중재가 미국의 각종 중재기관 등에서 각각의 영역별로 중재규칙을 제정하여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영국도 소비자 중재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 계약에 관한 불공정거래약관의 내용을 소비자 중재계약의 조건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각 개별법에 의한 중재를 영국중재법에 중재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미국처럼 해사, 노동, 보험, 금융, 의료, 특허, 소비자, 광고 등 다양한 종류의 중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 법원 중재제도의 실시

영국은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의 중재제도를 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석판사의 승인으로 상사법원의 판사와 대법원법에 의한 공인중재인도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인이 될 수 있다. 러시아는 법원중재법에 의해 설립된 러시아 연방 중재법원에서 상사 분쟁과 행정법원의 대상이 아닌 행정 관련 분쟁에 대하여 중재 법원에서 중재로 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도 소액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소액사건중재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상사사건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판사의 중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한 상사 중재원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현행조정제도를 발전시켜 법원의 상사중재제도 실시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 2. 중재 운영시스템상의 과제

### (1) 대한상사중재원의 업무영역확대

대한상사중재원은 국제사회에 외국무역이나 외국투자에 대한 신속 공정한 분쟁해결을 보장함으로써 한국의 무역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탄생되었다. 대한상사 중재원은 건설중재 등 국내중재의 영역을 넓혀 오긴 하였으나 국제 중재가 주된 업무였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식경제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예산이나 기관장의 인사가 지식경제부에서 지도감독 하고 있어 상행위를 벗어나거나 지식경제부의 영역을 벗어난 건설, 노동, 소비자, 의료 등의 분쟁은 중재원의 업무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또한 폭 넓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은 미국의 중재협회처럼 업종별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거나 다양한 중재를 할 수 있는 한국의 종합 중재기관으로서의 법률적 지위와 예산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한국의 명실상부한 중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2) 중재운영시스템의 확대

한국의 중재법은 임의 중재도 법적으로는 허용하고 있으나 기관중재를 기반으로 발전해왔다. 상기에서 살펴본 국가들과 비교 할 때 한국은 중재법에 의한 명실상부한 중재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 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은 업종별단체 중재기구, 미국중재협회, 미국해사중재위원회, 소비자 및 광고 분쟁을 전담하는 미국경영개선위원회 등 다양한 중재기관

이 있다. 중국도 각 성 및 주요시에 국내중재 중심의 중재기관과 CIETAC 등 섭외중재기관 그리고 해사 중재기관 등이 있으며, 러시아도 연방중재법원, 국제상사중재법원, 해사 중재위원회 등 다양한 중재 기관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각 업종별 소관중앙정부부처에서 조정제도만 운영하고 있으며 중재제도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운영기관은 지식경제부 산하 대한상사중재원만 있다.

따라서 각 중앙부처가 소비자, 의료, 금융, 노동, 건설 등을 중재까지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는 등의 종합적인 중재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활성화 조치가 요망된다. 중재기관은 각 중앙부처가 중재기관을 설치하거나 미국 중재협회처럼 대한상사중재원과의 중재업무 협조 체계구축이 검토될 수 있겠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국가로서는 한국과 중국, 유럽국가로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주 국가인 미국 등의 중재법과 뉴욕협약상의 중재 대상 및 이들 국가의 중재 운영 실태 비교 검토를 통한 한국의 중재영역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우선 문제점으로는,

첫째, 한국의 중재는 수출 진흥에 목적을 두고 출발하였기 때문에 폭넓은 중재 기반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중재제도개발이 미흡하다.

둘째, 한국중재법상의 중재대상은 사법상의 분쟁으로 하고 있어 공법과의 경계가 애매하거나 공법의 판단이 전제되는 분쟁인 공정거래, 소비자, 노동, 의료, 특허권 등에 대한 중재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한국은 현직 법관이나 공무원은 중재인이 될 수 없으며 법원의 중재제도도 없다. 그러나 영국은 수석판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사도 당사자가 합의하는 중재인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의 중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넷째, 한국의 유일한 대표적 상설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이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식품농림수산부, 고용노동부 등 타 부처 관할영역의 분쟁의 취급한계와 원활한 예산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한국의 중재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유일하나 미국 등은 업종별단체 중재기구, 해사중재기관, 소비자중재기관, 중재법원 등 다양한 중재기관이 있다.

한국의 중재영역 확대를 위하여 검토해야 될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중재의 기반조정을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중재를 실시 할 수 있는 확대정책을 추진하여야 하겠다.

둘째, 한국의 중재 대상을 소비자, 노동, 의료, 광고, 공정거래 등으로 법적인 보강이 요구된다.

셋째,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중재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판사의 중재인제도와 법원중재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넷째, 대한상사중재원이 지식경제부산하기관의 한계를 벗어나 한국의 종합중재기관으로서 위상 정립이 요망된다.

다섯째, 법원중심의 사법적 기능보다 당사자 자유의사에 의한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각 중앙부처별로 업종별 단체가 중심이 된 중재활성화를 위한 법적 정비를 통하여 자체 혹은 중재원과의 중재업무협조 시스템을 구축하여야겠다.

이상과 같은 다섯 가지의 과제를 해결한다면 한국은 법원중심의 강제적인 사법제도에서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분쟁해결 제도인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새로운 분쟁해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중재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저서

곽영실·김석철, 「상사중재론」, 도서출판 두남, 2008.9.

대한상사중재원, 「외국중재법규집」, 도서출판 두남, 2005.11.

森井清 「國際商事仲裁」, 1970.3.

Martin Domke, 「Domke on Commercial Arbitration」, 1984.

### 논문 및 자료

김석철,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2008년 한·중·러 상사중재 추계학술대회」

김석철, “건설중재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구축방안 연구”. 「중재연구」 제14권 제1호 2004.8.

www.adr.org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the Uniform Arbitration act」p11, modern Arbitration Statutes in the United States as of May 1984.

<http://www.globalarbitrationreview.com/handbook/3/section/6/cha> 2007.7.29.

### 법령

한국중재법

한국상법

중국중재법

Germany Tenth Book of the Code, Civil Procedure, Arbitration Procedure, Sections 1025 ~ 1066,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Section 1031, Form of Arbitration Agreement.

The United States Uniforms Arbitration Act

The United States Arbitrations Act

The United Kingdom Arbitration Act

France Code of Civil Procedure Part IV, Arbitration

Germany Tenth Book of the Code Civil Procedure, Arbitration Procedure Sections 1025~1066

The Russia Federal Law on Arbitration Court adopted on July 2002.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force 14 August 1933.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Convention 10 June 1958.

## ABSTRACT

### A Study on the Expansion of Arbitration's Area of Coverage in Korea

Suk-Chul, Kim

From the review of Korean arbitration systems with the comparison of those of other countries, we can summarize some issues to be tackled as follows:

First, Korean arbitration system started with the purpose of export promotion. This may be the main reason that various domestic disputes have not been resolved by arbitration.

Second, the Korean Arbitration Law applies to private disputes. The Law's arbitration scope is wider than that of China and France, but narrower than that of the U.S.A. that encompasses a variety of disputes in the filed of consumer, labor, medical services, patents, etc.

Third, active judges or public officials in Korea can not be arbitrator and there is no arbitration court. However, if chief judge allows the necessity, court's judges in the UK can be arbitrator with the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also arbitration system is operated in the court.

Fourth,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the only representative institution for arbitration in Korea, is under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MKE). This makes it difficult for the KCAB to handle other disputes related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tc.

Fifth, as mentioned, the KCAB is the unique institution for arbitration by the Law in Korea, while other countries allow have a diversity of arbitration agencies such as maritime arbitration organization, consumer arbitration institution, arbitration court, etc.

Therefore, we suggest some ideas to expand the arbitration's area of coverage in Korea as follows:

First, there should be more active policies that promote various domestic disputes to be settled by the arbitration system.

Second, it is quite needed to expand the scope of arbitration to cover many disputes in

the fields of consumer, labor, medical service, advertising, fair trade, etc.

Third, there should be discussions to allow court judges as arbitrator and to introduce the arbitration court.

Fourth, the KCAB should strengthen its status and roles as general arbitration organization to overcome the limited scope of commercial disputes. For this, there should be the strong support and coordination among the MKE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Fifth, to reduce the burden of the court's complicated and expensive procedures, more efficient disputes resolution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parties' free will. Each central government agency should streamline the legal barriers to allow industrial organizations under its control to establish their own or joint arbitration system with the KCAB.

**Key words** : commercial disputes, arbitration systems, arbitration court,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